

생수공급계약서

“갑” 상호: 필리핀 대사관

“을” 상호: 서울유통

대표자: 관계자

대표자: 김진성

상기 당사자간의 하기 조항에 의거하여 생수공급계약 약정을 함에 있어 “갑”“을”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.

제 1 조 [목적]

본 약정은 “을” 이 “갑”에게 제 2 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“갑”의 회원사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[품명]

“을”이 “갑”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
제 3 조 [공급물량]

- “을”은 생산된 생수의 일정량을 “갑”에게 공급한다.
- 물량 부족 발생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.

제 4 조 [공급가격]

- 5500 원/ 1 개를 기준으로 한다.
- 공급가격의 결정은 년 1 회 실시한다.
- 약정기간 내에 가격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가상승 또는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.

제 5 조 [거래방법]

- 물품대금의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.
- 물품의 유통 및 인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“을”이 그 책임을 지고 “갑”이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시행한다.

제 6 조[약정기간]

1. 약정기간은 1 년으로 한다. (2024 년 5 월 9 일~2025 년 5 월 8 일 까지납품하기로 한다.
2. 약정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의 약정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, 동일한 내용으로 본계약은 1 년간 연장 된것으로 한다.

제 7 조[정보제공 및 기밀유지]

“갑” 과 “을”은 상호간의 발전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각종 유효정보를 성실하게 교환하며, 한편 이로 인해 부득한 제 기밀사항은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[약정의 실효발생]

1. 본 약정의 효력은 즉시 성립된다.

고객(A): 주한 필리핀 대사관


MARIA THERESA B. DIZON-DE VEGA
Ambassador 

공급자(B) :서울 유통,김진성 대표 

122-16-45142

서울유통 김진성 

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580

현대아파트 211-909

도.소매 생 수

제 4 조[공급가격]에 따른 추가규정

2. 공급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물 품	단 위	가 격 (원)
0.3L 생 수	박스(박스당 20 병)	5,500
정수기	청약	30,000

2024 년 05 월 29 일